

동포체류지원센터 공모 알림

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·체류·영주·국적 등 법적 지위 보장과 한국어·한국사회의 이해 교육, 취업·법률 상담 등 동포의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유관 단체를 '동포체류지원센터'로 지정·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단체(기관)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3월 23일

법무부장관

【전체일정】

구분	일정	비고
접수기간	'26.3.23.(월) ~ 4.1.(수)	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
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사	'26.4.2.(목) ~ 4.24.(금)	서류검토·현장 실태조사 등
공모결과 발표	'26.4.30.(목)	법무부 홈페이지
위촉 및 지정서 교부	'26.5월 중	미정

1. 공모 개요

- 목 적 :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지원 및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민·관 협의체 구성
- 지원자격 : ※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지원 가능
 - ①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고충·취업상담 등 사회적응 지원 경험이 있고, 아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정부·지자체의 운영기관 및 대학 등 공공성이 있을 것

- ▶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,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 사업
- ▶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·체류자격·영주·국적 취득 등 법적 지위 향상 및 관련 상담
- ▶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·문화·홍보사업·통역 지원 업무
- ▶ 취업, 주거, 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및 각종 고충상담
- ▶ 동포의 출국지원 및 건전한 체류활동을 위한 법무부 협조 요청사항 지원
- ▶ 기타 동포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 지원

○ 지정기간 : '26. 6. 1.부터 '27. 6. 30.까지(1년 1월)

2. 접수

- 접수기간 : '26. 3. 23.(월)부터 '26. 4. 1.(수)까지 (10일 간)
- 접수방법 :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(gaeun911@korea.kr) 제출
 - ※ 등기우편으로 접수 시 기간 내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하며,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- 제출서류 :
 - ①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신청서 【첨부 1】
 - ②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계획서 【첨부 2】
 -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
 - ※ 해당 기관에 맞는 서류 제출 (예)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)
 - ④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증, 비영리민간 단체등록증
 - ⑤ 보유 건축물·시설물 확인 가능 서류(등기부등본 등)
 - ⑥ 상근 상담직원 운영 여부 확인 가능 서류(재직증명서,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등)
 - ⑦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류(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) 및 화재 등 사고 대비 안전대책

<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>

- (소재지) 보장 대상 시설물 등 소재지 주소가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장소와 일치하여야 함
- (보장기간) 사업개시일 이후까지 유효하여야 함
 - ※ 단, 공모일 기준 유효하나 '26년 말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충족한 것으로 보며, 추후 기간 갱신된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
- (보장금액) 기관 설립규정에 따른 별도 보험 가입이 없는 경우 담보사항으로 1인당 1억 원 이상, 사고당 3억 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
- (별도가입여부) 시설물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보험 내 담보사항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별도 가입 불필요

- 등기우편 접수처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(중앙동,정부과천청사)(13809)
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 동포체류지원센터 공모 담당자 앞
- 접수 문의 :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(☎ 02-2110-4056)

3. 신청 기본요건 및 심사절차

○ 기본요건

-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정부·지자체 운영기관 및 대학 등 공공성을 갖추고 있을 것
-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(강의실, 사무실, 상담실 등 포함)으로써, 동포지원을 위한 적합한 건축물을 갖추고 있을 것
- 건축물이 재해, 재난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
- 상근 상담직원을 3인 이상 갖추고 있을 것

※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포지원의 상징성, 지역적 특수성, 지역적 배분 등 균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(단, 보험 가입에 관한 요건은 반드시 충족 필요)

○ 우대요건

-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'동포 중점 운영 기관'에 해당하며, 실적이 우수할 경우
- 3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쉼터 시설을 갖춘 경우

○ 심사절차

- 서류심사 :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, 적격성 여부 확인

※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
- 선정심사 : '동포체류지원센터 심의위원회'를 개최하여 심사

- 최종지정 : 법무부 최종 지정

4. 공모결과 발표

○ '26. 4. 30.(목),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모결과 발표

※ 법무부(www.moj.go.kr),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(www.immigration.go.kr),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, 소시넷(www.socinet.go.kr) 홈페이지

5. 준수 사항

○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·단체는 법무부의 동포지원정책을 준수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

○ '동포체류지원센터'로 지정된 단체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법무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'동포체류지원센터'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
- ▶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
- ▶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,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의 추진이 부진·부실한 경우
- ▶ 법무부의 동포지원 정책방향과 상치되는 사업을 수행한 경우
- ▶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

- 【첨부】** 1.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신청서
2.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계획서

【첨부 2】

《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계획서》

프로그램 명칭	주요내용	운영목표	추진시기

본 단체(기관)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바
본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

년 월 일

기관(단체)명: (서명 또는 인)

대 표 자: (직인)